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962 발의연월일: 2022. 12. 15.

발 의 자:김학용・김용판・이주환

金炳旭・태영호・유의동

김정재 • 구자근 • 최영희

정운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고의적으로 고가 감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이른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.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감정평가사의 존재 목적임에도 불구하고, 감정평가사가 이러한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존재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인만큼 윤리의식 강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필요가 있음.

이에,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, 감정평가관리·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제한을 해소하여 감정평가사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처분이 가능토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3조, 제3 9조 등).

법률 제 호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제6호 중 "제13조"를 "제13조제1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항제7호 중 "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"를 "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"로 한다.

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그 형이 확정된 경우. 다만,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8조제1항제3호 중 "제39조"를 "제19조제1항제4호"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3호 중 "제13조"를 "제13조제1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항제4호 중 "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"를 "제13조제1항제2호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6.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1호 및 제

1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	제12조(결격사유) ①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.	
1. 삭 제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제13조</u> 에 따라 감정평가사	6. <u>제13조제1항제1호</u>
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	
지 아니한 사람	
7.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	7.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-
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	
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자격의 취소) ① 국토교통	제13조(자격의 취소) ①
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	
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
	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
	아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
	를 포함한다) 그 형이 확정된
	경우. 다만, 과실범의 경우는

(2)	•	(3)	(생	략)
<u> </u>		(0)	\ U	1/

제18조(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
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
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

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- 4. 5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- 제24조(사무직원) ① 감정평가법 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 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 원이 될 수 없다.
 - 1. · 2. (생략)
 - 3. <u>제13조</u>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
 - 4. <u>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</u> 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

제외한다.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)
①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19조제1항제4호</u>
4.•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사무직원) ①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13조제1항제1호</u>

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<<u>신</u> 설>

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

제39조(징계) ① 국토교통부장관 전 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·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 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, 제12호를 위반한 경우 및 제 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·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수 있다.

- 1. ~ 10. (생략)
- 11.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
 <삭 제>

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
 상 선고받아(집행유예를 선고

5.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
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
지 아니한 사람
6.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
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
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
람
<u>-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9조(징계) ①
제>

1. ~ 10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그 형 이 확정된 경우. 다만, 과실범 의 경우는 제외한다.

12.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1년 | <삭 제>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1항에 따른 징 계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감 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

② ~ ⑦ (생 략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